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5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개정이유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함.(안 제1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참고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u>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준용)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공무원여비규정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</u></p> <p>.</p> <p>.</p> <p>제3조(준용) 「<u>공무원여비규정</u>」</p>